

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3월 22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3월 10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3월 22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, 아동·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로부터 보호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통해 아동·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 및 제5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- 업무의 위탁 및 비밀준수의무(안 제7조 및 제8조)

3. 관계법령
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아동·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로부터 보호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구축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
다. 주요 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구청장은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지원하며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활동을 장려하도록 명시하였음
- 3)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 및 제5조)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실태조사의 실시와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4)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- 5) 업무의 위탁 및 비밀준수의무(안 제7조 및 제8조)

라. 검토 의견
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